집단소송법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96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백혜련・이병진・오세희

윤종군 • 염태영 • 김태년

김영진 • 서영석 • 민홍철

송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분쟁, 환경·공해 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피해자들이 집단민원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집단 소송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 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이에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 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 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2조).

- 바.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 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0조).
-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 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
- 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 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함(안 제31조 및 제32조).

-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 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내에 한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2조).
-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2조).

너.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

집단소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 가 되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2. "총원"이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전원을 말한다.
- 3.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 4. "대표당사자"란 총원을 위하여 소의 제기,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 5. "제외신고"란 구성원이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할)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5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집단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집단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 과 소송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집단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 항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측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 5. 총원의 범위
-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측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총원의 범위
 -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 6.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 2. 총원의 범위
 -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 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⑥ 제4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허가요건) ① 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 2.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 3.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 4.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②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12조(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원인을 소명

하여야 한다.

- ②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경합된 허가신청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 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심리(倂合審理)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각각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관계 법원,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허가결정) ①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측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총원의 범위
 - 5. 주문(主文)
 - 6. 이유
 -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8. 구성원이 제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 9. 제15조에 따른 비용의 감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5조(소송비용)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對訴),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 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불허가 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

- 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허가 결정의 고지사항) ① 법원은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대표당사자·법정대리인·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2. 피고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 3. 총원의 범위
 - 4.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5.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 6.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 7.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 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 9.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게재, 개별 통지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 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은 중앙일간지 2곳에 2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18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9조(구성원의 소송관여) ① 구성원은 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20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1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22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 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 제23조(대표당사자의 전부 변경) ①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 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19조에

-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22조 또는 제23조 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③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④ 제3항의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 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26조(총원의 범위의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 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27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고지한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시효중단의 효력) 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 1. 제16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2. 제26조에 따른 결정에 따라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 3. 제27조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2장 소송절차

- 제29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0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 제31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 제32조(석명 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31조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 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문서의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대표당사자 및 피고는 법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 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4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조(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①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본안의 소가 허가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다툼에 관련된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 청에 의하여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 개시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게시명령을 받은 자가 증거의 개시 등

- 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6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37조(소취하·화해·청구포기의 제한) ①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 2. 총원의 범위
 -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 ② 법원은 금전지급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 허락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9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40조(상소취하·상소권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 ② 대표당사자가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분배절차

- 제41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2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분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4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 금액 및 분배할 금액
 - 3. 제47조제1항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 5. 권리신고기간, 장소 및 신고방법
 - 6. 권리확인방법
 -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6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 ②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한다.
- 제47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 2. 권리실행비용
 -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 ②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의 진행과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8조(비용지급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

- 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부족한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 제49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0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이 분배계획안을 인가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1. 집행권원의 요지
 -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3. 분배계획의 요지
- 제51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52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성원은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신고할수 있다. 다만, 제56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3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 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확 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 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54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제55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 분배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 4. 잔여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59조 본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6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이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7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6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분배금의 수령기간 경과 후에 분배금을 분배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분배금액, 분배금의 지급총액, 잔여금의 처분, 분배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55조제3항은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8조(잔여금의 처분) ①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당시의 잔여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잔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제59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이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 제61조(추가분배)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이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62조(배임수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 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63조(배임증재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64조(몰수·추징) 제62조 및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 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
 부촉탁을 거부한 자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에 대한 현상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66조(감치명령) ①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명령 또는 촉탁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감치에 처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